

의안번호	2210785
의 퇴 인	이원택 의원
회 답 일	2025. 7. 23.
추계번호	25B3169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(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·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. <u>이 경우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제23조에 따른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정계획에 따라 부과하여야 함(제1항 후단 신설)</u>	재량/의무 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업인등의 소득 감소에 대하여 소득 감소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23조(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)	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(제2항) <u>4.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신설></u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(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)	제3항 신설	• 제3호 －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	제1항 후단 신설	• 미대상 －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 중으로,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를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23조(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)		※ 첨부 [참고자료 3]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현황 참고

2. 상세 사유

□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분 지원 대책 마련(안 제 13조제3항 신설)

-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,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분

- (기본직접지불제도)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(이하 ‘소농직불금’)과 면적직접지불금(이하 ‘면적직불금’)으로 구성
- (선택직접지불제도) 기존 친환경직불제, 경관보전직불제에 논활용직불제(개편전 논이모작직불)를 포함하고 제도 운영·단가 등을 기존처럼 유지

※ [참고자료 1] 농업직불제 개요

[참고자료 2]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(2025년 기준)

- 현행법은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·등록 농업인들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개정안은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득감소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, 소득감소분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, 기준, 규모 등 소득감소분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농업직불제 개요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□ 2019년 이전 농업직불제

종 류	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
쌀고정직불제 (’05~’19) (논농업직불: ’01~’04)	○ 지원목적: 쌀 생산량·가격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소득 지원 ○ 대상농지: ’98~’00년 사이에 논농업(벼, 미나리, 왕골, 연근 재배)에 이용된 농지 ○ 지원대상: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(타작물 재배, 휴경 포함)하는 농업인 등 ○ 지원단가: 평균 100만원/ha
쌀변동직불제 (’05~’19) (쌀소득보전: ’03~’04)	○ 지원목적: 쌀 농가에 직불금 지급하여 쌀값하락으로부터 농업인 소득감소분 보전 ○ 대상농지: 고정직불금 대상농지 중 논에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는 농지 ○ 지원대상: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,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 ○ 지원단가: (목표가격(214,000원/80kg) - 수확기쌀값) × 0.85 - 고정직불금
조건불리지역직불제 (’04~’19)	○ 지원목적: 농업생산성 낮고,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해 직불금 지원 ○ 대상지역: 읍지지역은 읍면의 경지율이 22%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 14%이상인 농지면적이 50%이상인 법정리, 도서지역(제주도 포함)은 읍면의 모든 법정리 ○ 대상농지: ’03~’05년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 ○ 단가: 농지 65만원/ha, 초지 40만원/ha(국고80%, 지방비20%)
발농업 직불제 (’12~’19)	<발고정> ○ 지원목적: 밭 이용 농지에 직불금 지급하여 밭농가 소득보전 및 자급률 제고 ○ 대상농지: 지목과 상관없이 ’12~’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○ 지원대상: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 ○ 지급단가: 밭고정 55만원/ha <논이모작(논활용직불)> ○ 지원목적: 6월 말까지 수확 가능한 이모작 품목 재배시 직불금 지급하여 자급률 제고 ○ 대상농지: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논과 ’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·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○ 지원대상: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 ○ 지급단가: 논이모작 50만원/ha
친환경 농업직불제 (’99~)	○ 지원목적: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○ 지원대상: 친환경인증 농가 대상(유기 5년, 무농약 3년) ○ 논 지원단가: 유기 95만원/ha, 무농약 75, 유기지속 57(’18년~) ○ 밭 지원단가: (과수)유기 140만원/ha, 무농약 120, 유기지속 84(’18년~) (채소·특작·기타)유기 130만원/ha, 무농약 110, 유기지속 78(’18년~)
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 (’09~)	○ 지원목적: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○ 지원대상: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○ 지원단가: 한우370 천원/두, 돼지 28 천원/두, 육계490 원/마리, 젖소(우유) 122 원/L, 계란 20원/개, 오리 630원/마리, 오리알 27원/개 등
경관보전직불제 (’05~)	○ 지원목적: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촌경관 조성 ○ 지원대상: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-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(지구)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(경관작물 2ha 이상, 준경관작물 10ha 이상) ○ 지원단가: 경관작물: 170만원/ha, 준경관작물: 100만/ha, 준경관초지: 45/ha
경영이양직불제 (’97~)	○ 지원목적: 65~74세 농업인 농지 이양으로 고령은퇴농 소득안정 도모 ○ 대상농지: 진흥지역 내 전·답과수원, 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된 전·답·과수원 등으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○ 지원대상: 65~74세,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농업인 ○ 지원단가(지급기간): 매도 330만원/ha, 임대 250만원/ha(2~10년 지급)
영농정착지원사업 (’18~)	○ 지원목적: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창업과 초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·농촌 정착 지원 ○ 지원대상: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비농업인 포함) ○ 지원금액: 선발인원에게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(’18~’22: 100만원)) 지원

□ 2020년 이후 공익직불제

종 류		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 + 지급현황('24)																					
공익 직불제	기본형 직불제	<기본형 직불제, 26,335억원('25)> ○ 지원목적: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○ 대상농지: 과거 쌀·밭·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* 등 *(쌀직불) '98~'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, (밭직불) '12~'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, (조건불리) '03~'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○ 지원대상: ①후계·전업농, 전업농육성대상자, ②'16- '19년 기존 직불금 수령자, ③신규자(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.1ha/법인: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/법인 4천 5백만원 이상) ○ 지원단가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간 단계</th><th rowspan="2">소농직불금 (0.5ha 이하)</th><th colspan="3">면적직불금(만원/ha)</th></tr><tr><th>0.1~2ha</th><th>2~6ha</th><th>6~30ha</th></tr><tr><td>논·밭 진흥</td><td rowspan="3">130만원/가구</td><td>205</td><td>197</td><td>189</td></tr><tr><td>논 비진흥</td><td>178</td><td>170</td><td>162</td></tr><tr><td>밭 비진흥</td><td>134</td><td>117</td><td>100</td></tr></table> ○ 지급건수('23): 1,285천건(소농 490, 면적 795) ○ 지급면적('23): 1,109천ha(소농 153, 면적 956) ○ 지급액('23): 23,018억원(소농 5,875, 면적 17,143)	구간 단계	소농직불금 (0.5ha 이하)	면적직불금(만원/ha)			0.1~2ha	2~6ha	6~30ha	논·밭 진흥	130만원/가구	205	197	189	논 비진흥	178	170	162	밭 비진흥	134	117	100
	구간 단계	소농직불금 (0.5ha 이하)			면적직불금(만원/ha)																		
			0.1~2ha	2~6ha	6~30ha																		
	논·밭 진흥	130만원/가구	205	197	189																		
논 비진흥	178		170	162																			
밭 비진흥	134		117	100																			
사업비· 이행점검비	○ 지원목적: ① 공익직불 신청·접수·지급에 필요한 지자체 행정경비, 홍보, 연구용역비 등 ② 준수사항 이행점검, 부정수급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																						
선택형 직불제	<전략작물직불, 2,440억원('25), ~'22까지 논활용직불> ○ 지원목적: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,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차등 지원 *(단일재배) 동계 : 밀 1ha당 100만원, 식량작물 50만원, 조사료 50만원 하계 : 가루쌀·두류 1ha당 200만원, 하계조사료 500만원, 옥수수, 깨 100만원 (이모작) 동계 밀·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·가루쌀 이모작하는 경우 100만원 추가 지급 ○ 지급건수('24): 77천건, 지급면적('24): 134ha, 지급액('24): 1,522억원 <친환경농업직불제, 319억원('25)> ○ 지급건수('24): 31천건 ○ 지급면적('24): 32천ha ○ 지급액('24): 208억원 <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, 41억원('25)> ○ 지급건수('24): 21호 ○ 지급액('24): 3억원 <경관보전직불제, 168억원('25)> ○ 지급건수('24): 15천건 ○ 지급면적('24): 18천ha ○ 지급액('24): 121억원 <저탄소농업프로그램, 233억원('25)> ○ 지급건수('24): 3.6천건(경종) * 축산: '24.11~12월 이행비도 지급 예정으로 현재 이행점검 완료 후 지급액 산정 중 ○ 지급액('24): 40억원(경종), 8억원(축산)* * 환경친화사료 출시 지연으로 인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기간 단축																						

□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결과

<최근 3년간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: 2022~2024년>

(단위: 천ha, 천건, 억원)

구 분	2022년도			2023년도			2024년도		
	대상면적	지급대상	지급액	대상면적	지급대상	지급액	대상면적	지급대상	지급액
기본형 직불제	1,058	1,129	21,943	1,109	1,285	23,018	1,076	1,284	23,084
－ 소농직불	144	450	5,405	153	490	5,875	163	517	6,713
－ 면적직불	914	679	16,538	956	795	17,143	913	767	16,371
선택형 직불제	131	96	741	169	119	1,379	187	147	1,994
－ 친환경직불 (농업+축산)	33	35	228	33 (축산21건)	33 (축산21건)	214	32	31 (축산21건)	211
－ 경관보전직불	13	11	86	11	11	85	18	15	121
－ 전략작물직불 (~'22 논활용직불)	85	50	427	125	70	1,017	134	77	1,522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[참고자료 2]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¹⁾

구분	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
지급 대상자	▶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,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(0.1ha이상)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- 다만,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이면 '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'임을 증명 *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: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 등 ▶ 기존 수령자 - 2016~2019년 중 직불금(쌀·밭·조건불리)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▶ 정책 대상자 - 후계농업경영인,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▶ 신규 대상자 -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.1ha(농업법인 5ha)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(농업법인 4,500만원) 이상인 농업인(농업법인)
지급대상 농지	▶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쌀·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- 쌀직불: 1998~2000년 - 밭직불: 2012~2014년 - 조건불리직불: 2003~2005년
소농 직불금	▶ 경작면적이 0.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: 1인에게만 130만원 지급 ▶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요건 ① 농지 면적 합이 0.1~0.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,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,600만원 미만,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,800만원 미만 ▶ 농가 내 모든 구성원(비농업인 포함)의 전체 요건 ⑥ 농지 면적 합이 1.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,500만원 미만 *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: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
면적 직불금	▶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 ▶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0.1ha~2ha 이하, 2구간 2ha~6ha 이하, 3구간 6ha 초과로 구분 ▶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,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

1)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「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」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

[참고자료 3]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현황

□ 설치 현황

① 명칭		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		
② 소속 및 성격		소 속	주 관	성 격
		농림축산식품부	농림축산식품부	행정위원회() 단순자문(√) 심의() 의결()
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(입법형식)		·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(20.5.1) · 정부입법(), 의원입법(√)		
④ 위원회 구성일		· 2021.5.11.		
⑤ 존속기한 및 근거		· 미설정(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)		
⑥ 설치목적		· 공익직불제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심의		
⑦ 기 능		·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 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·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, 단가체계,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·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 원에 관한 사항 심의 등		
⑧ 위 원 (총 21명)	위원장 (임명권자)	농림축산식품부장관 * 당연직 여부(√)		
	공무원 (총 6명)	농림축산식품부장관, 기획재정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농림축산식품부 차관, 환경부차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		
	민간위원 (총 15명)	농업인 단체 대표 5명, 소비자 단체 대표 및 언론계 5명, 학계 및 전문 가 5명		
	기 타	(별도구분) 여성 6명(40%), 비수도권 2명(13%), 현장전문가 5명		
	직무윤리 규정	(공무원의제)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2조제2호 (해촉기준)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		
⑨ 회의 개최실적 ('21~'25)	본회의	출석 0회, 서면 0회		
	개최장소	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0회, 비수도권 0회		
	분과회의	분과위원회명: 없음 출석 0회, 서면 0회		
⑩ 예 산('25년)		해당 없음		

□ 활동내역서

1.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('25.6월말 기준)

- 총 0회(본회의 : 출석 0회, 서면 0회 / 분과위 : 출석 0회, 서면 0회)

* '25년 1월부터 누적 횟수 기재

2.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

(단위: 개최횟수)

구 분	총계	본회의			분과위원회		
		합 계	출석회의	서면회의	합 계	출석회의	서면회의
2022년	0	0	0	0	0	0	0
2023년	0	0	0	0	0	0	0
2024년	1	1	1	0	0	0	0
총계	0	0	0	0	0	0	0

3.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: 해당 없음